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31. 민병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2.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4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전체회의(2025. 4. 2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 제43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상정 · 축조심사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4.)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전체회의(2026. 5. 1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민병덕의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 범죄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요인 평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

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입법 필요성 검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기술은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을 주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교통, 복지, 의료, 에너지, 환경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연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편, 이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책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으로,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2025. 1. 21.)하였음.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선두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중국

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적 난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일반적으로, 인공지능기술 개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쟁점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적법 요건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임.

먼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따라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그러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를 대규모로 스크래핑(Scraping)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현행 법상의 정보주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와 법령의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음으로,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 측면을 살펴보면, 당초 서비스와는 다른 신규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당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대규모로 수집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활용 특성상 서비스 가입시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별도 동의'를 추가로 받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 동의 사항이므로 데이터의 결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기술 개발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가명정보 특례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인공지능기술개발(목적 외 이용)에 활용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기술 개발자체가 어렵거나 성능이 미흡해지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자율주행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려는 경우, 얼굴과 시선, 번호판 등의 정보를 가명처리하면 AI가 보행자 동작을 예측하거나 차량간 상호작용 패턴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와 같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제외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는 최대 4년간 인정되는 한시적 방안으로,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현재의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 개

말이 어렵고,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로 이에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마련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현행법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특례를 도입하는 경우,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특례의 적용 요건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하려는 경우, 특례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2항).

사전 심의를 거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적 불확실성 제거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인공지능기술 개발 촉진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문제는 사고 발생 후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심의제도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인정

보처리자가 법적 문제를 미리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다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① 사전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고, ② 행정기관의 사전적 규제가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후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지체될 우려와 관련하여, 종전의 심의·의결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참고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실증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신속한 특례 적용 등을 위해 절차 간소화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음.

다. 위험요인 평가 및 제출

개정안은 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없이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법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 생체인식 정보 등을 포함하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은 유출될 경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공공기관의 사례와 같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조치 등을 도출하는 위험요인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실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28조의13제3항제5호는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위험요인 평가를 완료하여 제출해야 하는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위험요인 평가를 도입하려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를 판단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요건 중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

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문구가 위임의 내용을 한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식의 위임의 필요한 것으로 보임.

라. 정보 공개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체적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②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 평가제도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위험요인 평가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 외에 위험요인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 보호위원회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 관리·감독 등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기술 개발 특례를 인정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개발 특례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나 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로서의 성격이 있어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령에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전송 요구에 따르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현황 및 활용내역 등을 체계적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법 제35조의4),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시행령 제42조의15)한 사례도 있음. 둘째, 제63조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사업장 등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은 제출받은 서류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기업협회는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 셋째,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관계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63조에 따른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달리, 이 경우에만 자료제출 대상자에 ‘관계자’를 포함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

바. 특례의 제한

개정안은 특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실상 특례의 적

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 정보 처리의 특례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 제28조의13제3항제2호는 문언상 ‘특례 적용 요건’과 ‘보호위원회가 부가한 조건’을 모두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취지상 두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